##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남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014

발의연월일: 2024. 8. 20.

발 의 자:김남희·장종태·남인순

이수진 · 서미화 · 김 윤

정성호 · 김선민 · 이기헌

이연희 · 황정아 의원

(119]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자립이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자립정착금 지원 등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'자립지원'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.

그런데 자립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에 비하여 현행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 아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.

현행법은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아동보호시설이나 가정위탁 등 보건복지부의 소관에 속한 아동 관련 기관 등에 거주하거나 거주 경험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, 아동복지시설 외에도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청소년복지시설 등 자립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거주하는 시설이 다수 있음.

이에 현행법에 따라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를 '자립지원아동 등'으로 정의하고, 그 범위를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보호

하고 있는 시설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아동까지 확대함으로써 자립지원에 관한 부처 칸막이를 없애려는 것임(안 제3조제 12호 신설 등).

###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2. "자립지원아동등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동 등을 말한다.
  - 가.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 서 보호조치 중인 사람 및 그 보호조치가 종료된 지 5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
  - 나. 다음에 열거된 시설(이하 이 호에서 "시설"이라 한다)에서 거 주 중인 아동
    - 1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
    - 2)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
    - 3)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
    - 4)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
    - 5)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

- 률」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
- 6) 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노숙인자활시설,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
- 7)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- 다. 18세에 달하기 전에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의 보호조치가 종료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라. 나목에 열거된 시설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는 아동으로써 보건 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"를 "자립지원아동등의"로 하고, 같은 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38조의2제1항 중 "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"를 "자립지원아동등의"로 한다.

제39조의2제1항 중 "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"를 "자립지원아동등의"로 한다.

제40조제4호 중 "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에"를 "자립지원 아동등에"로 한다.

제59조제6호 중 "보호대상아동의"를 "자립지원아동등의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3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11. (생 략)	1. ~ 11.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12. "자립지원아동등"이란 다음
	<u>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</u>
	는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
	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
	동 등을 말한다.
	<u>가.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</u>
	호에 따라 가정이나 아동
	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
	인 사람 및 그 보호조치가
	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
	아니한 사람
	나. 다음에 열거된 시설(이하
	이 호에서 "시설"이라 한
	<u>다)에서 거주 중인 아동</u>
	<u>1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</u>
	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
	<u>거주시설</u>
	2)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
	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
	<u>지시설</u>

- 3)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 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」 제12조제1항 및 제 2항에 따른 보호시설
- 4)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

   자보호 등에 관한 법

   률」 제9조제1항에 따른

   지원시설
- 5)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 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원에 관한 법률」 제22 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 른 정신재활시설
- 6) 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노숙인자활 시설,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
- 7)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 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시설
- <u>다. 18세에 달하기 전에 제15</u> <u>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</u>

제38조(자립지원) ① 국가와 지방 제38조(자립지원) ① 국가와 지방 제38조(자립지원) ① 국가와 지방 제38조(자립지원) ② 보호대상아동의 위 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 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. 1. ~ 5. (생 략)

-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 <삭 제>
- 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- 1.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
- 2.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사람
- 3.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

따른 가정이나 아동복지시 설에서의 보호조치가 종료 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람

라. 나목에 열거된 시설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는 아동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38조(자립지원) ①	-
<u>자립지원아동등의</u> -	_
	_
	_

1. ~ 5. (현행과 같음) <<u>삭 제></u>

#### 나지 아니한 사람

-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 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 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 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 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
- ③ (생략)
- 제38조의2(자립지원 실태조사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아 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 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 원, 생활 및 정서적 · 신체적 건 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 마다 실시하여야 한다.
  - ②·③ (생 략)
- 제39조의2(자립지원전담기관의 | 제39조의2(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· 운영) ①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 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 치 · 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(생략)

3	(현행	과 같	음)			
제38:	조의2(	자립지	기원 -	실태조	소사)	1
				- <u>자립</u>	지원	아
<u>동</u>	등의					

-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 설치 • 운영) ① ---------자립지원아동등의---
- ② (현행과 같음) 제40조(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 제40조(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

- 탁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
- 1. ~ 3. (생략)
- 4. <u>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</u>
   <u>원 대상자에</u> 대한 사례관리
   5. (생 략)
- 제59조(비용 보조)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  - 1. ~ 5. (생략)
  - 6. 제38조에 따른 <u>보호대상아동</u>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비용7. · 8. (생 략)

탁)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자립지원아동등에
5. (현행과 같음)
제59조(비용 보조)
1. ~ 5. (현행과 같음)
6 <u>자립지원아동</u>
<u>등의</u>
7 • 8 (현행과 같음)